

# 2019년도 제11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7. 15.(월요일), 14:0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2명 참석
  - 심의위원 : 강상욱, 손승우(분과위원장)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107회)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5,163건(안건번호 제2019-67972호~70037호)
  - 회의결과: 사설서버 게임 정보를 공유하는 다음(daum) 카페에서 무단 이용한 게임 캐릭터 게시물 1개 안건(제2019-67972호)은 게임 캐릭터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여부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함
  - 게시자가 직접 부른 일본 가요를 이용한 영상물 게시물 1개 안건(제2019-67973호)은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결함
  - 나머지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을 권고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11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19-107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B 위원 :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모두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 같은 생각임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회의록을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함

#### 3. 안전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전은 안전번호 제2019-67972호~70037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5,160건임  
안전번호 제2019-67972호는 저작권자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것

으로, 사설서버 게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다음(daum) 카페에서 게임 캐릭터를 전송한 사안임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를 제시하면서)민원인은 캐릭터 원본 이미지, 프로그램 등록증, 상표자료(총 37페이지) 등을 제출함

(관련 판례를 제시하면서)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 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사설서버 게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의 첫 화면인데, 게시판을 포함하고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심의대상 게시물을 삭제하게 되면 게시판은 물론 해당 카페 전체가 차단되는 결과가 발생함

위 카페에서는 사설서버 게임 프로그램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사설서버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지는 아니함

한편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함

(심의대상 게시물의 해당 캐릭터와 민원인이 제출한 원본 이미지를 대조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 상단의 캐릭터의 경우 게시자가 색 보정 작업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움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 2019-67972호 사설서버 게임 정보 공유 카페에서 무단 이용한 캐릭터 이미지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의 캐릭터는 카페 첫 화면 상단에 있어 게시물을 삭제하게 되면 카페 전체가 차단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사이트 전체의 차단이 현행 저작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심의대상 게시물 상단의 캐릭터 이미지만 분리하여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게시판 서비스 정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법 제133조의2에 따라 6개월 이내 기간으로 명령하여야 하고,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을 근거로 게시판 정지의 시정권고를 할 수는 없음  
사이트 전체의 차단은 현행 저작권법상 보호원이 취할 수 없는 행정 조치임

기술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게시물 전체를 삭제하는 대신 게시물에서 게임 캐릭터 부분만 분리하여 삭제할 수 있는지에 관해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함

최근 심의 사례 중 복제권, 전송권 등을 침해하는 음원파일을 배경음악으로 이용한 영상을 전송한 건이 있었음

그 사안에서 배경음악은 상업적 저작물의 데드카피이지만, 영상 부분은 소재저작물인 사진들을 편집하여 만든 것이었음

게시물의 URL 주소 단위로 시정권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상물에서 배경음악 부분만 분리하여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하지는 않았음  
다만 그 사안에서는 영상의 소재로 이용된 출처 불명인 사진저작물의 복제권, 전송권 침해 또한 쟁점이 되었음

- A 위원 : 보호원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게임 캐릭터 부분만 삭제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지 보호원에서 시도해 본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A 위원 : 해당 캐릭터 이미지는 카페 운영자가 올린 것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다음(daum) 카페의 카페지기가 제공한 사안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직접게시로 볼 수는 없음  
 카페지기 닉네임이 '관리자'로 되어있어 마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게시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음  
 한편 지금까지 우리 심의위원회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하는 게임 불법복제물에 관한 시정권고 심의를 주로 해 왔는데, 본 건의 경우 게임프로그램 그 자체가 아닌 게임 캐릭터의 복제물을 대상으로 심의를 하고 있음
- A 위원 : 해당 사이트에 대하여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카페의 메인화면, 공지사항을 보여주면서)사설서버 게임 회원을 모집하는 카페로 보이고, 공지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텔레그램 메신저 가입을 유도하고 있음
- B 위원 : 본 건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로 보이며 향후 불법복제물이 URL에 의해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거나, 불법복제물과 합법 복제물이 융합되어 특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호원이 시스템적으로 구비해야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A 위원 : 의견에 동의하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다양한 유형의 시

정권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성원영 전문위원 : 시정권고를 집행하는 기술의 문제인데, 저작권법 제 133조의3 제1항 제2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 조치를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반드시 게시물 단위로 시정권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게시물의 일부분을 특정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함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경과를 제시하면서)참고로 민원인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였고, 그 후 다부처 민원으로 지정되어 게임 캐릭터 저작권 침해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상표권 침해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민원처리 업무를 하고 있음

민원인은 해당 카페의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관 업무로 보임

보호원은 민원인에게 보호원이 접속차단을 할 권한이 없으며, 저작권 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해 전화로 설명하였다고 함

- A 위원 : 본 건은 권리자 요청 건으로 심의대상 게시물 상단의 캐릭터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임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카페를 꾸미기 위해 해당 캐릭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술적으로 이 부분만 특정하여 삭제가 될 수 있다면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도 가능할 것임

- 성원영 전문위원 :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심의대상 게시물 주소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는 저작권법 제133조의2에 따른 게시판 정지 시정명령 내지 사이트 접속차단과 유사한 결과를 발생시키므로 허용해서는 안 되고,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음

- B 위원 : 불법복제물이 URL 주소로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거나, 불법복제물과 합법복제물이 융합되어 있어 불법복제물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시정권고 방법을 전체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A 위원 : 의견에 동의하며,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불법복제물을 분리하여 삭제를 요청하는 등 새로운 시정권고 유형과 게임 캐릭터 복제물 전송이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지를 전체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안전번호 제2019-67972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을 삭제 또는 전송중단 할 경우 해당 카페에 대한 접속이 차단되는 결과가 발생되므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67973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게시자가 직접 부른 일본 가요를 이용한 영상물을 게시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영상을 재생하면서) 게시자는 반주음악에 맞춰 직접 부른 음원 등을 이용한 영상물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는데, 취미로 일본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부르면서 이를 녹음한 것으로 보임  
해당 블로그는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게시자는 심의대상 게시물에 원 저작물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를 설정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방식으로 출처표시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만약 심의대상 게시물에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공정이용 등 저작권

권 제한 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보면, 본 건 게시자가 저작권자(작곡가)와 실연자 등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반주음악을 이용한 행위는 복제권, 전송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게시자가 직접 부른 노래 부분은 저작권자(작사가)의 복제권, 전송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마찬가지로 영상물(음원 제외) 부분의 무단 이용은 저작권자의 복제권, 전송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19-67973호 게시자가 직접 부른 일본 가요를 이용한 영상물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본 건의 경우 비영리적 취미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공정 이용의 여지를 배제하기 어려워 보임
- B 위원 : 본 건은 권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민원이 제기 되었고, 반주음악에 맞춰 순수하게 취미 목적으로만 사용한 것으로 보여 공정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부결 의견임
- A 위원 : 안전번호 제2019-67972호는 만장일치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공정이용 등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67974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게시물에 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기면 불법복제물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사안임  
참고로 해당 게시자는 2019. 6. 25. 동일 카페에 음원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준다는 내용의 게시물 2건을 올렸고, 제1분과위원회(2019. 7. 4. 개최, 제2019-106회)는 위 2건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한 바 있음

한편 보호원은 2019. 7. 5. 댓글에 네이버 아이디를 남겼으나 이메일로 음원파일을 제공받지 못하였는데, 심의위원회는 댓글 내용, 댓글 개수와 같은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만으로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인정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의 댓글을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에는 다수의 네이버 아이디가 댓글에 남겨져 있고, 게시자가 “보내드렸습니다^^”와 같은 댓글을 작성한 점, 게시자와 불법복제물 이용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댓글을 작성하였을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게시자가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19-67974호 불법복제물을 이메일로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 다른 의견 없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함
- A 위원 : 같은 생각임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안전번호 제2019-67974호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므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67975호~70037호는 모두

단순 복제한 음악, 프로그램, 게임, 만화, 어문, 영상물 등을 웹하드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이용에 무단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 A 위원 : 단순 불법복제물이므로 이의 없이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B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67975호~70037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19-67972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 여부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하고, 안전번호 제2019-67973호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전번호 제2019-67975호~70037호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4. 폐회 선언

- 손승우 분과위원장이 제11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11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7. 22.

분과위원장 손승우

위원 강상욱